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1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총칙	부처명칭 변경	해당 조항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라 약칭한다.) <개정 2025.10.01.>				
	정의	법제 2 조	[유해화학물질] 25.09.01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2. 인체만성유해성물질 3. 생태유해성물질 4. 사고대비물질		수산화나트륨 외 다수	유해화학물질(사용업)허가증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 공개 등	화학물질 확인	법제 9 조 규칙제 3 조,4 조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확인 명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예)기존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해당되지 않음	화학물질확인명세서 화학물질확인증명신청서 화학물질확인증명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법제 11 조 영제 6 조 규칙제 5 조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환경부 요구 시 협조	()년도 화학물질 환경배출량. 이동량 조사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법제 11 조의 2 규칙제 5 조의 2~4 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다음 사업장은 5 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 톤 이상 배출 사업장: 맨 뒷장 참조 예) 암모니아 등 2. 종업원이 30 명 이상인 사업장		■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서 제출 □해당되지 않음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제 13 조 규칙제 8 조[별표 1]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취급자는 다음의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 2.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 및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작업자 외에 제 32 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지정하는 제 33 조제 1 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or 안전교육을 받은자 일 것 6.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규칙[별표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 맨 뒤장 참조			유해화학물질관리절차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법제 14 조 규칙제 9 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 2017-7 호, 2017. 12. 1.,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취급자는 다음에 해당될 경우, 개인 보호장구 착용할 것 1.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보호장구 착용 습관화 □해당되지 않음	유해화학물질관리절차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2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법제 15 조① 규칙제 10 조	유해화학물질을 다음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 시는 사전에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을 것. 1.유독물질 : 500kg 초과 2.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 10kg 초과	■유해화학물질진열.보관계획서 제출 □해당되지 않음	유해화학물질진열.보관계획서 진열보관계획서등확인증명서		
		법제 15 조③ 규칙제 11 조	유해화학물질을 다음량을 초과하여 운반 시는 사전에 운반계획서를 작성,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을 것. 1.유독물질 : 5,000kg 초과 2.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 3,000kg 초과	■유해화학물질진열.보관계획서 제출 □해당되지 않음	유해화학물질운반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등	법제 16 조①	유해화학물질의 용기,포장 에 유해화학물질표시 부착(소량 판매시도 포함) 예)명칭,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험문구,예방조치 문구,공급자정보,국제연합번호	유해화학물질표시 부착	유해화학물질관리절차		
		법제 16 조② 규칙제 12 조 [별표 2,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취급현장,보관.저장.진열 장소,운반차량 에 유해화학물질표시 부착 [별표 2]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별표 3]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유해화학물질표시 부착	유해화학물질관리절차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법제 19 조 영제 9 조 규칙제 15 조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것	■허가신청서 제출 □해당되지 않음	허가물질허가신청서 허가물질허가증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법제 20 조①:삭제 법제 20 조②,④ 규칙 17 조	인체등유해성물질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신고 및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 25.10.01	□신고신청서 제출 ■해당되지 않음	인체등유해성물질수입신고서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법제 21 조 규칙제 18 조	제한물질,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승인서류 제출 □해당되지 않음	제한.금지물질수출(변경)승인신청서 제한.금지물질수출(변경)승인서		
	환각물질등의 흡입금지	법제 22 조 영제 11 조	누구든지 흥분.환각,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다음의 환각물질을 섭취,흡입목적으로 소지금지 1.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신너,접착제,풍선류 또는 도료 3.부탄가스	■교육 실시 □해당되지 않음	교육결과 기록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3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의 작성·제출	법제 23 조 규칙제 19 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 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러 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의 학교 3. 다음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면제 조건] 1. 별표 1 제 5 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하는 시설 예)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연구개발/시험사용 견본품 2. 별표 3 의 2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맨 뒷장 참조 ▪ 암모니아/하위규정수량: 기체(2 톤), 액체(20 톤) ▪ 규정수량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에서 최대로 체류(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 4.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5.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6.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7.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8.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9. 「항공보안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공항운영자가 설치 ·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0. 제 1 호~제 9 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해당되지 않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신청서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서 이행 등	법제 23 조의 2 규칙제 19 조의 3	① 제 23 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서면점검: 1 년 주기 2. 현장점검(가위험도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해당한다): 5 년 주기			□해당되지 않음 ■서면/현장점검 수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제 23 조의 3 규칙제 19 조의 4	①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는 제 2 항에 따 른 방법으로 매년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해당되지 않음 ■지역사회 고지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4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취급시설의 설치	법제 24 조① 규칙제 21 조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 ▪ 규칙[별표 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해당되지 않음		
	취급시설의 검사 (최초,정기,수시)	법제 24 조②,③ 규칙제 22,23 조	규칙 제 23 조 : 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등 *최초검사 : 취급시설 가동 전에 최초검사 실시 *정기검사 2025.09.01 1. 1 군사업장-가위험도 취급시설: 매 1 년 2. 1 군 사업장-나 or 다위험도 취급시설: 매 2 년 3. 2 군사업장 취급시설: 매 3 년 4.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중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취급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4 년 *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후 7 일 이내 다음의 경우 검사 면제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의 학교: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4.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5. 그 밖에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 등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주기적으로 검사 실시 □해당되지 않음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수시검사 대상 통지서 취급시설[정기검사,수시검사]결과 신고서 / 검사결과서 첨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법제 24 조⑤ 규칙제 23 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 및 안전진단결과보고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검사결과 취급시설의 구조/설비가 침하,균열,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 취급시설 설치 후, 규칙 제 19 조제 4 항에 따라 검토결과서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내 1. 가위험도 취급시설: 매 4 년 2. 나위험도 취급시설: 매 8 년 3. 다위험도 취급시설: 매 12 년		■주기적으로 안전진단 실시 □해당되지 않음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신고서 / 안전진단결과보고서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5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		법제 26 조 규칙제 26 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주 1 회 이상 해당 취급시설 및 장비에 대해 점검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5 년간 기록.비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주 단위 점검 실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대장[별지 제 42 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유해 화학 물질 영업 허가	영업의 구분	법제 27 조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제출서류	법제 28 조①	다음 중 해당 자료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 23 조제 5 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 24 조제 6 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영업허가	법제 28 조②,③ 규칙제 27,28 조 법제 29 조(면제) 규칙제 31 조	지방환경관서장에게 허가신청서 제출(신청자) 신청인에게 허가증 발급(환경부)	■허가서 제출 □해당되지 않음	유해화학물질()허가신청서 유해화학물질()허가증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사용업)	
				[면제기준] 규칙제 31 조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영업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향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 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1. 한 번에 1 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2. 상수원보호구역 밖: 연간 120 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 제외)사용자. 다만,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 톤 이하로,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 제외)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 톤 이하로 한다. 3.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밖: 연간 60 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 제외)사용자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연구실만 설치·운영하는 자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환경부장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자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6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유해 화학 물질 영업 허가	변경허가	법제 28 조⑤ 규칙제 29 조	다음사항이 변경된 경우 ▪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50/100 이상 증가)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50/100 이상 증가) ▪ 허가 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 제외) ▪ 제 19 조제 2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 의 2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발생시 및 1 회/연 이상 준수평가 후 해당 시 변경/등록신고 실시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서, 신고서)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증	
		변경신고	법제 28 조⑤ 규칙제 29 조	다음사항이 변경된 경우 ▪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 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 증가 ▪ 법 제 28 조제 2 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발생시 및 1 회/연 이상 준수평가 후 해당 시 변경/등록신고 실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법제 31 조 규칙 32 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할 경우, 환경부령에 따라 신고	☒ 도급 실시 ☐ 해당되지 않음	유해화학물질 취급도급신고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법제 32 조 영제 12 조 규칙 33 조,34 조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 환경부령에 따라 유해화학 물질 관리자를 선임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기준] ▪ 산업안전.물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이상 자격소지자 ▪ 가스.환경.위험물기능사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을 32 시간 이상 받은 사람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 시간 이상 받은자 ▪ 화학물질취급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 시간 이상 받은자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 해당되지 않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 해임서, 퇴직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7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법제 33 조 규칙 37 조	다음 인원은 16 시간/2 년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이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유해화학물질취급담당자 다만,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는 추가로 16 시간 이수		■ 주기적 교육 이수 □ 해당되지 않음	교육수료증	
		법제 33 조 규칙 37 조③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는 정기교육 이수 ▪ 2 시간 이상 / 매년(1 회)		■ 주기적 교육 이수 □ 해당되지 않음	교육수료증 또는 교육결과보고서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법제 40 조 규칙제 44 조, 별표 9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외부인 출입 기록 등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관리기준을 준수 - 규칙[별표 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 □ 해당되지 않음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	법제 4 1 조	제 4 1 조 삭제 < 2 0 2 0 . 3 . 3 1 . >		법제 2 3 조로 이동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해관리계획의 지역사회고지	법제 4 2 조	제 4 2 조 삭제 < 2 0 2 0 . 3 . 3 1 . >		법제 2 3 조로 이동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제44조 관련)<개정 2018. 11. 29.>						
	1. 니트로벤젠, 황산,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핵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소 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 취급자 및 도난·전용 위험 등이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인계하는 자는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제56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나. 취급시설 및 판매시설의 출입자와 방문차량을 확인하여 제56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다. 해당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취급시설 운영자·관리자 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저장·보관시설, 진열·보관장소 및 운반차량에 경보장치 또는 잠금장치 등 물리적인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때는 제외하며, 5년간 동의서를 보존해야 한다. 마.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경찰서, 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2.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관리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학사고의 대응 등	응급조치 실시	법제 43 조 규칙제 49 조	화학물질취급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응급조치 실시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실시		
	관할 지방관서에 신고		화학물질취급자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상황 발생 시 관할관서에 신고		
보칙	보고 및 검사 등	법제 49 조 규칙제 53 조	법 제 49 조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자는 연간 실적보고서를 매년 3 월 31 일까지 협회에 제출		매년보고		세부 실적보고서
	서류의 기록.보존	법제 50 조 규칙제 56 조	아래의 서류보존 대상자는 하래 보존대상 기록물을 기록한 날로부터 5 년간 보존		5 년 이상 보존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8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서류보존 대상자] 1. 화학물질확인을 한자 2.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은 자 3.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은 자 4.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 5.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6.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7.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8.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자		[보존 대상 기록물]] 1.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2. 수입신고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9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별표 1]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 물질(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번호	CAS No.	화학물질명 한글명	번호	CAS No.	화학물질명 한글명
1	000071-43-2	벤젠	209	000133-06-2	캡탄
2	000075-01-4	염화 비닐	210	000133-07-3	폴펫
3	000079-01-6	트리클로로에틸렌	211	000133-59-5	염화 o-톨루엔술폰산
4	000106-99-0	1,3-부타디엔	212	000135-20-6	쿠페론
5	000067-66-3	클로로포름	213	000137-26-8	티람
6	000068-12-2	N,N-디메틸포름아미드	214	000137-30-4	지람
7	000075-09-2	디클로로메탄	215	000139-65-1	4,4'-티오디아닐린
8	000107-13-1	아크릴로니트릴	216	000140-29-4	벤젠아세토니트릴
9	000127-18-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17	000140-66-9	4-tert-옥틸페놀
10	000050-00-0	포름알데히드	218	000151-56-4	에틸렌이민
11	000075-21-8	산화 에틸렌	219	000298-02-2	포레이트
12	000101-14-4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 메탄	220	000300-76-5	날레드
13	000107-30-2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	221	000301-12-2	옥시디메톤-메틸
14	000056-23-5	사염화 탄소	222	000302-01-2	히드라진
15	000062-53-3	아닐린	223	000330-55-2	리누론
16	000075-56-9	산화 프로필렌	224	000333-41-5	디이아지논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10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17	000077-78-1	황산 디메틸			225	000470-90-6			클로르펜빈포스				
18	000078-79-5	이소프렌			226	000492-80-8			아우라민				
19	000078-93-3	메틸 에틸 케톤			227	000531-85-1			벤지딘 이염산염				
20	000079-06-1	아크릴아미드			228	000534-52-1			디엔오시				
21	000080-05-7	4,4'-비스페놀 에이			229	000542-75-6			1,3-디클로로프로펜				
22	000084-74-2	디부틸 프탈레이트			230	000545-06-2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23	000091-20-3	나프탈렌			231	000553-26-4			4,4'-디피리딜				
24	000095-80-7	2,4-디아미노톨루엔			232	000556-52-5			글리시돌				
25	000096-23-1	1,3-디클로로-2-프로판올			233	000556-61-6			이소티오시안산 메틸				
26	000098-88-4	염화 벤조일			234	000563-12-2			에티온				
27	000098-95-3	니트로벤젠			235	000569-64-2			염화 [4-[α-[4-(디메틸아미노)페닐 벤질리덴]시클로헥사-2,5-디엔-1- 일리덴]디메틸암모늄				
28	000100-41-4	에틸벤젠			236	000593-60-2			브롬화 비닐				
29	000100-42-5	스티렌			237	000606-20-2			2,6-디니트로톨루엔				
30	000100-44-7	염화 벤질			238	000612-83-9			3,3'-디클로로벤지딘 이염산염				
31	000101-77-9	4,4'-메틸렌디아닐린			239	000615-05-4			2,4-디아미노아니솔				
32	000106-46-7	1,4-디클로로벤젠			240	000624-92-0			이황화 메틸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11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33	000106-89-8	에피클로로히드린		241	000632-99-5		마젠타	
34	000107-06-2	1,2-디클로로에탄		242	000640-15-3		티오메톤	
35	000108-05-4	아세트산 비닐		243	000644-97-3		디클로로(페닐)포스핀	
36	000108-88-3	톨루엔		244	000680-31-9		헥사메틸 포스포르아미드	
37	000109-86-4	2-메톡시에탄올		245	000793-24-8		N-(1,3-디메틸부틸)-N'-페닐-p-페닐렌디아민	
38	000110-80-5	2-에톡시에탄올		246	000822-06-0		디이소시아산 헥사메틸렌	
39	000111-15-9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		247	000823-40-5		2,6-디아미노톨루엔	
40	000115-96-8	트리(2-클로로에틸) 포스페이트		248	000944-22-9		페노포스	
41	000117-81-7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249	000950-37-8		메티다티온	
42	000121-14-2	2,4-디니트로톨루엔		250	001120-71-4		1,3-프로판 술통	
43	000123-91-1	1,4-디옥산		251	001300-71-6		자일레놀	
44	000140-88-5	아크릴산 에틸		252	001310-58-3		수산화 칼륨	
45	000141-78-6	아세트산 에틸		253	001310-73-2		수산화 나트륨	
46	000630-08-0	일산화 탄소		254	001313-60-6		과산화 나트륨	
47	001163-19-5	산화 데카브로모디페닐		255	001314-20-1		이산화 토륨	
48	001330-20-7	자일렌(o-,m-,p- 이성질체 혼합물)		256	001314-56-3		오산화 인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12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49	004098-71-9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257	001314-80-3	오황화 인		
50	007803-57-8	히드라진 수화물		258	001319-77-3	크레졸(o-,m-,p- 이성질체 혼합물)		
51	008001-58-9	크레오소트		259	001341-49-7	이플루오르화 암모늄		
52	015096-52-3	크리올라이트		260	001563-66-2	카보푸란		
53	026471-62-5	디이소시안산 톨루엔 2,4-,2,6-,혼합 이성질체 혼합물)		261	001634-04-4	메틸 tert-부틸 에테르		
54	000056-53-1	디에틸스틸베스테롤		262	001694-09-3	벤질 바이올렛 4B		
55	000095-53-4	o-톨루이딘		263	001861-40-1	벤플루랄린		
56	000193-39-5	인데노[1,2,3-cd]피렌		264	001897-45-6	클로로타로닐		
57	000298-81-7	8-메톡시-6,7-푸라노쿠마린		265	001910-42-5	파라콰트 염류		
58	001332-21-4	석면		266	001937-37-7	직접염료 블랙 38		
59	NA	납 및 그 화합물		267	002032-65-7	메티오캅		
60	NA	수은 및 그 화합물		268	002104-64-5	이피엔		
61	NA	니켈 및 그 화합물		269	002212-67-1	몰린에이트		
62	NA	비소 및 그 화합물		270	002274-67-1	디메틸빈포스		
63	NA	베릴륨 및 그 화합물		271	002275-23-2	바미도티온		
64	NA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72	002310-17-0	포살론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13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65	NA	크롬 및 그 화합물		273	002312-35-8	프로파지트		
66	000051-28-5	2,4-디니트로페놀		274	002429-74-5	직접염료 블루 15		
67	000051-52-5	프로필티오우라실		275	002439-01-2	치노메티오나트		
68	000051-75-2	메클로르에타민		276	002439-10-3	도딘		
69	000051-79-6	우레탄		277	002551-62-4	헥사플루오르화 황		
70	000052-51-7	브로노폴		278	002593-15-9	테라졸		
71	000052-68-6	트리클로르폰		279	002595-54-2	메카밤		
72	000052-85-7	팜퍼		280	002597-03-7	펜토에이트		
73	000054-11-5	니코틴		281	002602-46-2	직접염료 블루 6		
74	000055-38-9	펜티온		282	002699-79-8	플루오르화 술퍼릴		
75	000056-38-2	파라티온		283	002921-88-2	클로르피리포스		
76	000057-14-7	1,1-디메틸히드라진		284	003033-77-0	염화 2,3-에폭시프로필 트리메틸암모늄		
77	000057-57-8	β -프로피오락톤		285	003347-22-6	디티아논		
78	000060-09-3	p-아미노아조벤젠		286	003380-34-5	트리클로산		
79	000060-11-7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287	004170-30-3	크로톤알데히드		
80	000060-34-4	메틸히드라진		288	005124-30-1	1,1'-메틸렌비스 [4-이소시아나 토시클로헥산]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14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81	000060-35-5	아세트아미드		289	005470-11-1		염화 히드록실암모늄	
82	000060-51-5	디메토에이트		290	005945-33-5		비스페놀 A 비스(디페닐 포스페이트)	
83	000061-82-5	아미트룰		291	006291-85-6		3-에톡시프로필아민	
84	000062-56-6	티오우레아		292	006459-94-5		산성염료 레드 114	
85	000062-73-7	디클로르보스		293	007440-09-7		칼륨	
86	000063-25-2	카바릴		294	007440-23-5		나트륨	
87	000064-19-7	아세트산		295	007637-07-2		트리플루오로보란	
88	000064-67-5	황산 디에틸		296	007647-01-0		염화 수소	
89	000067-56-1	메틸 알코올		297	007652-64-4		1,1'-(1,3-페일렌디카르보닐) 비스(메틸아지리딘)	
90	000067-63-0	2-프로판올		298	007664-39-3		플루오르화 수소	
91	000067-72-1	헥사클로로에탄		299	007664-41-7		암모니아(수산화 암모늄 (CAS No. 1336-21-6) 포함)	
92	000068-11-1	메르캅토아세트산		300	007664-93-9		황산	
93	000071-55-6	1,1,1-트리클로로에탄		301	007681-49-4		플루오르화 나트륨	
94	000074-83-9	브롬화 메틸		302	007697-37-2		질산	
95	000074-85-1	에틸렌		303	007704-34-9		황	
96	000074-86-2	아세틸렌		304	007719-09-7		염화 티오닐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15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97	000074-87-3	염화 메틸		305	007719-12-2		삼염화 인	
98	000074-88-4	요오드화 메틸		306	007722-84-1		과산화 수소	
99	000074-90-8	시아나화 수소		307	007723-14-0		인	
100	000074-94-2	디메틸아민 보란		308	007726-95-6		브롬	
101	000075-00-3	염화 에틸		309	007758-01-2		브롬산 칼륨	
102	000075-07-0	아세트알데히드		310	007758-19-2		아염소산 나트륨	
103	000075-15-0	이황화 탄소		311	007775-09-9		염소산 나트륨	
104	000075-18-3	황화 메틸		312	007782-50-5		염소	
105	000075-27-4	브로모디클로로메탄		313	007783-06-4		황화 수소	
106	000075-35-4	1,1-디클로로에텐		314	007789-23-3		플루오르화 칼륨	
107	000075-44-5	포스겐		315	007790-94-5		클로로술폰산	
108	000075-52-5	니트로메탄		316	007803-49-8		히드록실아민	
109	000076-03-9	트리클로로아세트산		317	007803-51-2		포스핀	
110	000076-87-9	수산화 트리페닐주석		318	008001-54-5		염화 N-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	
111	000077-47-4	헥사클로로시클로펜타디엔		319	008014-95-7		발연 황산	
112	000078-48-8	포스포로트리티오산 S,S,S-트리 부틸		320	008018-01-7		만코젠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16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113	000078-82-0	2-메틸프로판니트릴		321	008030-30-6		나프타	
114	000079-11-8	클로로아세트산		322	010025-87-3		옥시염화 인	
115	000079-19-6	티오세미카바지드		323	010026-13-8		오염화 인	
116	000079-27-6	1,1,2,2-테트라브로모에탄		324	010034-85-2		요오드화 수소	
117	000079-46-9	2-니트로프로판		325	010034-93-2		황산 히드라진	
118	000081-07-2	사카린		326	010035-10-6		브롬화 수소	
119	000081-81-2	왈파린		327	010039-54-0		황산 비스(히드록실암모늄)	
120	000085-00-7	이브롬화 디콰트		328	010453-86-8		레스메트린	
121	000085-68-7	부틸벤질 프탈레이트		329	012427-38-2		마네브	
122	000086-50-0	아진포스-메틸		330	013171-21-6		포스파미돈	
123	000087-62-7	2,6-디메틸아닐린		331	013194-48-4		에토프로포스	
124	000088-06-2	2,4,6-트리클로로페놀		332	013356-08-6		산화 펜부타틴	
125	000088-73-3	1-클로로-2-니트로벤젠		333	013516-27-3		구아자틴	
126	000088-85-7	디노셉		334	013593-03-8		퀴날포스	
127	000088-89-1	피크르산		335	015263-53-3		칼탑	
128	000090-04-0	o-아니시딘		336	016071-86-6		직접염료 브라운 95	
129	000090-43-7	비페닐-2-올		337	016079-88-2		할로겐화 히단토인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17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130	000090-94-8	4,4'-비스(디메틸아미노)벤조페논		338	016871-90-2		헥사플루오르규산 칼륨	
131	000091-22-5	퀴놀린		339	016872-11-0		플루오로붕산	
132	000091-66-7	N,N-디에틸아닐린		340	016893-85-9		헥사플루오르규산 나트륨	
133	000091-94-1	3,3'-디클로로벤지딘		341	016961-83-4		플루오로규산	
134	000092-93-3	4-니트로비페닐		342	017109-49-8		에디펜포스	
135	000094-59-7	사프롤		343	017804-35-2		베노밀	
136	000094-75-7	2,4-디		344	018854-01-8		이속사티온	
137	000095-51-2	2-클로로벤젠아민		345	020325-40-0		3,3'-디메톡시벤지딘 이염산염	
138	000096-09-3	(에폭시에틸)벤젠		346	020816-12-0		사산화 오스뮴	
139	000096-18-4	1,2,3-트리클로로프로판		347	020893-30-5		2-티엔일아세토니트릴	
140	000096-24-2	클로로히드린		348	022781-23-3		벤디오캡	
141	000096-45-7	에틸렌티오우레아		349	023564-05-8		티오판에이트-메틸	
142	000097-17-6	디클로펜티온		350	023950-58-5		프로나미드	
143	000097-56-3	o-아미노아조톨루엔		351	024017-47-8		트리아조포스	
144	000098-00-0	2-푸란메탄올		352	025068-38-6		4,4'-(1-메틸에틸리덴)비스페놀과 (클로로메틸)옥시란의 중합체	
145	000098-01-1	푸르푸랄		353	025154-52-3		노닐페놀	
146	000098-07-7	(트리클로로메틸)벤젠		354	025265-76-3		페닐렌디아민(o-,m-,p-이성질체 혼합물)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18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147	000099-99-0	4-니트로톨루엔		355	025311-71-1	이소펜포스		
148	000100-40-3	4-비닐시클로헥센		356	025321-14-6	디니트로톨루엔		
149	000100-61-8	N-메틸아닐린		357	025376-45-8	디아미노톨루엔		
150	000100-63-0	페닐히드라진		358	026087-47-8	이프로벤포스		
151	000100-69-6	2-비닐피리딘		359	026628-22-8	아지드화 나트륨		
152	000101-61-1	4,4'-메틸렌 비스(N,N-디메틸)벤젠아민		360	027083-27-8	N,N''''-1,6-헥산디일비스(N'-시아노구아니딘)과 1,6-헥산디아민 염산염의 중합체		
153	000101-68-8	4,4'-다이소시아산 디페닐메탄		361	030560-19-1	아세페이트		
154	000101-80-4	4,4'-디아미노디페닐 에테르		362	031218-83-4	프로페탐포스		
155	000102-82-9	트리부틸아민		363	035400-43-2	술프로포스		
156	000103-23-1	디(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364	039156-41-7	황산 2,4-디아미노아니솔		
157	000104-40-5	4-노닐페놀		365	039300-45-3	디노캅		
158	000106-47-8	p-클로로아닐린		366	041198-08-7	프로페노포스		
159	000106-51-4	1,4-벤조퀴논		367	051630-58-1	펜발러레이트		
160	000106-88-7	1,2-에폭시부탄		368	052315-07-8	제타-싸이퍼메트린		
161	000106-93-4	1,2-디브로모에탄		369	052645-53-1	퍼메트린		
162	000106-97-8	부탄		370	052918-63-5	데카메트린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19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163	000106-98-9	1-부텐	371	055285-14-8		카보솔판		
164	000107-01-7	2-부텐	372	059669-26-0		티오디캅		
165	000107-02-8	아크롤레인	373	062850-32-2		페노티오캅		
166	000107-04-0	1-브로모-2-클로로에탄	374	065907-30-4		푸라티오캅		
167	000107-05-1	염화 알릴	375	068085-85-8		싸이할로트린		
168	000107-07-3	2-클로로에탄올	376	068359-37-5		싸이플루트린		
169	000107-12-0	프로피오노니트릴	377	069409-94-5		플루발린에이트		
170	000107-18-6	알릴 알코올	378	079622-59-6		플루아지남		
171	000107-19-7	2-프로핀-1-올	379	079723-02-7		프탈산 수소 테트라메틸암모늄		
172	000108-42-9	m-아미노클로로벤젠	380	080060-09-9		디아펜티우론		
173	000108-91-8	시클로헥실아민	381	082560-54-1		벤푸라캅		
174	000108-95-2	페놀	382	084852-15-3		가지형 4-노닐페놀		
175	000109-09-1	2-클로로피리딘	383	086598-92-7		이미벤코나졸		
176	000109-77-3	말로노니트릴	384	096489-71-3		피리다벤		
177	000109-89-7	디에틸아민	385	096491-05-3		테닐클로르		
178	000110-49-6	아세트산 2-메톡시에틸	386	097886-45-8		디티오피르		
179	000110-54-3	n-헥산	387	098886-44-3		포스티아제이트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20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180	000110-65-6	2-부탄-1,4-디올		388	106917-52-6		플루솔파미드	
181	000110-82-7	시클로헥산		389	111872-58-3		할펜프록스	
182	000111-30-8	글루타르알데히드		390	119168-77-3		테브펜피라드	
183	000111-92-2	디-n-부틸아민		391	119446-68-3		디페노코나졸	
184	000112-02-7	염화 N-헥사데실트리메틸암모늄		392	120068-37-3		피프로닐	
185	000114-26-1	프로폭서		393	122453-73-0		클로르페나피르	
186	000115-07-1	프로필렌		394	131538-00-6		4-메르캅토메틸-3,6-디티아-1,8-옥탄디티올	
187	000115-28-6	클로렌드산		395	172343-40-7		4-(2,4-디클로로-3-메틸벤조일)-1,3-디-디메틸-5-피라졸산 나트륨	
188	000115-29-7	엔도솔판		396	NA		아민,tert-알킬(C=12-14),1-아미노-9,10-디히드로-9,10-디옥소-4-(2,4,6-트리메틸아닐리노)-안트라센-2-술폰산	
189	000115-32-2	디코폴		397	NA		퍼플루오로옥탄산 테트라메틸암모늄	
190	000116-14-3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398	NA		산화 트리헥실포스핀, 산화 트리-n-옥틸포스핀, 산화 디옥틸 모노 옥틸 디헥실포스핀의 혼합물	
191	000119-90-4	3,3'-디메톡시벤지딘		399	NA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및 그 염류	
192	000119-93-7	3,3'-디메틸베지딘		400	NA		아질산 염류	
193	000120-71-8	p-크레시딘		401	NA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194	000120-80-9	카테콜		402	NA		안티몬 및 그 화합물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21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195	000121-69-7	N,N-디메틸아닐린		403	NA	바륨 및 그 화합물		
196	000121-75-5	말라티온		404	NA	붕소 및 그 화합물		
197	000121-82-4	시클로나이트		405	NA	코발트 및 그 화합물		
198	000122-14-5	페니트로티온		406	NA	구리 및 그 화합물		
199	000122-19-0	염화 벤질디메틸옥타데실암모늄		407	NA	망간 및 그 화합물		
200	000122-60-1	페닐 글리시딜 에테르		408	NA	셀레늄 및 그 화합물		
201	000123-31-9	하이드로퀴논		409	NA	주석 및 그 화합물		
202	000124-40-3	디메틸아민		410	NA	바나듐 및 그 화합물		
203	000126-97-6	(2-히드록시에틸)암모늄 메르 캅토아세테이트		411	NA	아연 및 그 화합물		
204	000126-98-7	메타아크릴로니트릴		412	NA	무기시아나화합물		
205	000126-99-8	클로로프로렌		413	NA	은 및 그 화합물		
206	000128-04-1	디메틸디티오카르밤산 나트륨		414	NA	수소화불화탄소		
207	000128-37-0	2,6-디-tert-부틸-4-히드록시 톨루엔		415	NA	과불화탄소		
208	000132-27-4	o-페닐펜산 나트륨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22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2. 20.>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

1. 취급시설 적정 유지·관리

- 가.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 내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갖추고,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할 것
- 나.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관·저장시설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시설(集水施設) 및 집수조 등에 물이 괴어 있지 않도록 할 것
- 다. 폭발 위험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접지(接地)하고,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 다만,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라. 유해화학물질 용기는 온도, 압력, 습도와 같은 대기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마. 앞서 저장한 화학물질과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탱크로리, 저장탱크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폐액(廢液)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 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남은 빈 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2.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 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중에 음식물, 음료 등을 섭취하지 말 것
- 나. 유해화학물질은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함께 혼합 보관하거나 운반, 접촉하지 말 것
- 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말 것. 다만, 적절한 보안경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라.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해당 물질을 관리할 것
- 마. 화재, 폭발 등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은 가연성 물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열·스파크·불꽃 등의 점화원(點火源)을 제거할 것
- 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하는 장소 주변이나 하역하는 동안 차량 안 또는 주변에서 흡연을 하지 말 것
- 사. 용접·용단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티의 비산(飛散)거리 이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말 것

- 아. 유해화학물질이 묻어 있는 표면에 용접을 하지 말 것. 다만, 화기 작업허가 등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자. 열, 스파크 등 점화원과 접촉 시 화재, 폭발 등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하지 말 것. 다만, 부득이 용접·용단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기 내를 불활성가스로 대체하거나 중화, 세척 등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 차.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 중에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한 가스의 존재여부 및 산소 결핍 여부를 점검한 이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것
- 카.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호퍼(hopper: 밑에 깔대기 출구가 있는 큰 통)나 컨베이어, 용기 등에 낙하시킬 때에는 낙하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고체 유해물질의 낙하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때에는 분진을 포집(捕執)하기 위한 분진 포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타.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동할 때에는 용기 높이의 90% 이상을 담지 않도록 할 것
- 파. 인화성을 지닌 유해화학물질은 그 물질이 반응하지 않는 액체나 공기 분위기에서 취급할 것
- 하. 유해화학물질을 계량하고 공정에 투입할 때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기를 포집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 시 상시 가동할 것
- 거. 용기에 들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공정에 모두 투입한 경우에는 용기에서 증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密封)하여 두거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곳에 둘 것
- 너.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반응, 추출, 교반(휘저어 섞음), 혼합, 분쇄, 선별, 여과, 탈수, 건조 등의 공정은 밀폐 또는 격리된 상태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더.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이 넓은 지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 러.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차량의 접근을 통제할 것
- 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23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3. 보관·저장

- 가.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간격을 둘 것
- 나. 폭발성 물질과 같이 불안정한 물질은 폭발 반응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보관할 것
- 다. 고체 유해화학물질은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히 밀폐 상태로 보관할 것

4. 상자·하차 및 용기·포장

- 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 나. 뚜껑을 포함한 용기는 유해화학물질의 반응 등으로 인한 변형 및 손상이 없는 재질이어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출 것
- 다. 운반 도중 파손되거나 유출·누출 위험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상 유리 등 파손 우려가 있는 용기를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운송 시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포장을 견고히 하여 운반 도중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라. 용기는 취급자가 사용 후 다시 잠글 수 있는 밀봉 뚜껑을 갖출 것

5. 운반

- 가.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었을 때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발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함께 보관·운반하지 말 것
- 나. 차량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규정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200킬로미터 이상(고속국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4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를 동승시키거나 운행 중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것
- 다. 버스, 철도,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지 말 것
- 라.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지 말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배로 보내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의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
- 마. 차량의 운전석이나 승객이 타는 자리 옆에 유해화학물질을 두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화물칸으로 이송하고 화물칸은 덮개를 덮을 것
- 바.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증기, 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 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도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재, 폭발, 유출·누출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할 것
- 아.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 시에는 비산하는 분진이 없도록 할 것
- 비고: 위 기준 외에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24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관련)<신설 2021. 4. 1.>

1.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단위: 톤)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하위 규정 수량	상위 규정 수량
1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Formalin; Formaldehyde ;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2	메틸히드라진(메틸하이드라진)[Methylhydrazine ; 60-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0
3	포름산(폼산)[Formic acid ; 64-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4	메틸알코올[Methylalcohol ; 67-56-1]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5	벤젠[Benzene ; 71-43-2]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6	염화메틸[Methyl chloride ; 74-8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7	메틸아민[Methylamine ; 74-8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8	시아나화수소(사이안화수소)[Hydrogen cyanide ; 74-9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6	3
9	염화비닐(염화 바이닐)[Vinyl chloride ; 75-01-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10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 75-15-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1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 75-21-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2	포스겐[Phosgene ; 75-4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13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 75-5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4	산화 프로필렌[Propylene oxide ; 75-56-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5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 78-9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16	메틸비닐케톤[Methyl vinyl ketone ; 78-9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0
17	아크릴산[Acrylic acid ; 79-1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18	메틸아크릴레이트[Methyl acrylate ; 96-3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25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19	니트로벤젠(나이트로벤젠)[Nitrobenzene ; 98-9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20	4-니트로톨루엔(4-나이트로톨루엔)[4-Nitrotoluene ; 99-9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21	벤질클로라이드[Benzyl chloride ; 100-4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0
22	아크롤레인[Acrolein ; 107-02-8]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0
23	알릴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 107-0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24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로나이트릴)[Acrylonitrile ; 107-13-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25	에틸렌디아민(에틸렌다이아민)[Ethylenediamine ; 107-1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
26	알릴알코올[Allyl alcohol ; 107-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27	m-크레졸(m-크레솔)[m-Cresol ; 108-39-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8	40
28	톨루엔[Toluene ; 108-88-3]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29	페놀[Phenol ; 108-95-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8	40
30	n-부틸아민(n-뷰틸아민)[n-Butylamine ; 109-73-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31	트리에틸아민(트라이에틸아민)[Triethylamine ; 121-4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32	아세트산에틸[Ethyl acetate ; 141-7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33	시안화나트륨(사이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 143-3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 황혈염(Potassium ferrocyanide) · 적혈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한다.					2	20
34	에틸렌이민[Ethylenimine ; 151-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
35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2,4-TDI) ; 584-8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36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 630-0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37	아크릴로일클로라이드[Acryloyl chloride ; 814-6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
38	인화아연[Zinc phosphide ; 1314-84-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39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 1338-23-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40	디이소시아산이소포론(다이아이소사이안산 아이소포론)[Isophorone diisocyanate ; 4098-7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41	나트륨[Sodium ; 7440-2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4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 7647-01-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5*	400*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26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43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린화 수소)[Hydrogen fluoride ; 7664-3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4*	20*
44	암모니아[Ammonia ; 7664-41-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20*	400*
45	황산[Sulfuric acid ; 7664-9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0
46	질산[Nitric acid ; 7697-37-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0
47	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 ; 7719-1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
48	불소[Fluorine ; 7782-4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49	염소[Chlorine ; 7782-5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50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 7783-0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51	아르신 또는 삼수소화비소[Arsine; Arsenic trihydride ; 7784-42-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52	클로로술포산(클로로설포산)[Chlorosulfonic acid ; 7790-94-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53	포스핀[Phosphine ; 7803-5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54	옥시염화인[Phosphorus oxychloride ; 10025-8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55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 10049-04-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
56	디보란(다이보레인)[Diborane ; 19287-4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57	산화질소[Nitric oxide ; 10102-4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58	니트로메탄(나이트로메테인)[Nitromethane ; 75-5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59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 6484-52-2] 및 이를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0	헥사민[Hexamine ; 100-9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2	60
61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 7722-84-1] 및 이를 3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2	염소산칼륨[Potassium chlorate ; 3811-04-9]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0
63	질산칼륨[Potassium nitrate ; 7757-79-1]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4	과염소산칼륨[Potassium perchlorate ; 7778-7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0
65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 7722-6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0
66	염소산나트륨[Sodium chlorate ; 7775-09-9]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0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27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67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 ; 7631-99-4]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8	사린[O-Isopropyl methyl phosphonofluoridate ; 107-44-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69	염화시아민[Cyanogen chloride ; 506-77-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70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 13463-39-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71	모노게르만 또는 사수소화게르마늄[(Germane ; Germanium tetrahydride ; 7782-65-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2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Tetrafluoroethylene ; 116-1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3	트리플루오로보란(트라이 플루오로 보란)[Trifluoroborane ; 7637-0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74	트리클로로붕소[Boron trichloride ; 10294-3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75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헥사플루오로-1,3-뷰타다이엔) [Hexafluoro-1,3-butadiene ; 685-6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6	브롬[Bromine ; 7726-9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77	세렌화수소(셀레늄화 수소)[Hydrogen selenide ;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8	이소프렌(아이소프렌)[Isoprene ; 78-7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79	1,1-디클로로에틸렌(1,1-다이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 75-35-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0	헥사메틸디실록산[Hexamethyl disiloxane ; 107-4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1	펜타카르보닐철[Pentacarbonyl iron ; 13463-40-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2	오불화브롬[Bromine pentafluoride ; 7789-3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3	염화티오닐(염화싸이오닐)[Thionyl chloride ; 7719-0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4	사염화타이타늄(사염화타이타늄)[Titanium tetrachloride ; 7550-4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5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6	비닐에틸에테르[Vinyl ethyl ether ; 109-9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87	실란(실레인)[Silane ; 7803-62-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88	디실란(다이실레인)[Disilane ; 1590-87-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89	디클로로실란(다이클로로실레인)[Dichlorosilane ; 4109-96-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90	트리클로로실란(트라이클로로실레인) [Trichlorosilane ; 10025-78-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1	메틸디클로로실란(메틸다이클로로실레인) [Methyldichlorosilane ; 75-5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13.08.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5.10.01(3)	쪽 번 호	28 / 28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92	메틸트리클로로실란(메틸트라이클로로실레인) [Methyltrichlorosilane ; 75-79-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3	트리클로로비닐실란[Trichlorovinylsilane ; 75-9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4	에틸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ethylsilane ; 115-21-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5	테트라메틸실란(테트라메틸 실레인) [Tetramethylsilane ; 75-76-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6	테트라클로로실리콘(테트라클로로실리콘)[Silicon Tetrachloride; 10026-0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7	테트라플루오로실리콘[Silicon tetrafluoride ; 7783-6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수량 기준(각 물질별 하위 규정수량과 상위 규정수량 기준을 말한다)은 환경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1. 규정수량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에서 최대로 체류(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수량에도 불구하고 42번, 43번 및 44번의 물질은 상온·상압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표시된 값을 규정수량으로 한다.
3. 규정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